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55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이주희 · 최혁진 · 이광희
박정현 · 김우영 · 문진석
용혜인 · 손 술 · 정혜경
전종덕 · 김남근 · 최민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실적시의 경우와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를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음.

물론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불확실하므로, 이와 같은 현행법의 처벌규정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심각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상당수 주 및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명예훼손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의 대상으로 하거나 독일에서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만 처벌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적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

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한편 모욕죄의 경우에도, 그 보호법익이 사람의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라는 것이나 사실적시도 아닌 욕설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 및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위축효과가 있어 이 역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는 형사법의 근본 원칙인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폐지가 타당함.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폐지하고, 그와 관련한 책임 소재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 방법으로 묻도록 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강화하고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함.

또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 등 유지되는 처벌조항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이를 친고죄로 변경하고, 허위사실의 경우 가벌성이 크다는 점, 기타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은 상향하여 개정함(안 제307조부터 제312조까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7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및 제3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2조(고소) 제307조제2항, 제308조 및 제309조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307條(名譽毀損) ① 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毀損한 者는 2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②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毀損한 者는 5年 以下の 懲役, 10年 以下の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308條(死者의 名譽毀損)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死者의 名譽를 毀損한 者는 2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309條(出版物等에 依한 名譽毀損) ① 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新聞, 雜誌 또는 라디오 其他 出版物에 依하여 第307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의 方法으로 第307條	제307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u><삭 제></u> ② 공언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언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u><삭 제></u>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

<u>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の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 停止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	<u>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 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第310條(違法性の 阻却) 第307條 第1項의 行爲가 眞實한 事實로 서 오로지 公共의 利益에 關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u>	<u><삭 제></u>
<u>第311條(侮辱) 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 以下の 懲役이 나 禁錮 또는 2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u>	<u><삭 제></u>
<u>第312條(告訴와 被害者の 意思)</u> <u>① 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u> <u>② 第307條와 第309條의 罪는 被害者の 明示한 意思에 反하 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u>	<u>제312조(고소) 제307조제2항, 제308조 및 제309조제2항의 罪는 高소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u>